

일본의 양계현황과 난가안정대책 (II)

— 난가안정제도 운영과 문제점 —

吳 鳳 國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일본은 과거 10여년간에 걸쳐 되풀이 되어온 주기적인 양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난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으며 그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위 “난가안정제도(卵價安定制度)”를 만들어 양계산업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이렇다 할 안정대책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한심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양계불황을 맞이하여 우리도 우리의 살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슬기를 모아 양계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촉구하도록 협조하고 단결된 힘을 과시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는 난가안정제도 및 육계안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다른 양계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연구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본의 난가안정제도의 운영과 문제점을 기술하여 독자 여러분의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본의 난가안정대책

일본의 난가안정대책으로서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 (1) 난가안정기금
- (2) 조정보관 사업
- (3) 난액공사의 저장 사업
- (4) 생산조절 등이다.

이들 4가지 외에 수에 수입정책도 포함시킨다면 5가지 방안이 주요한 일본의 난가안정대책이며 이들 5가지 방안을 요약하여 보면 표1과 같다. 또한 이들 안정대책이 난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기능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면 (1) 시장의 활용성, (2) 시장개입의 여부 (3) 수요, 공급의 조정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요약하여 보면 표2과 같다.

이러한 안정대책은 그때 그때 적절히 알맞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겠으나 5가지 대책은 종합적인 이해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 난가안정대책요약

안정대책	내 용
1. 난가안정기금	(1) 생산자가 적립한 돈을 기금으로 하여 난가가 기준보다 하락되었을 때 이 돈으로 가격차액을 보전하여준다. (2) 파잉출하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관한 계란에 대한 손해액을 보전하여준다. (3) 1975년 이후 난가 보전 계약에 「생산자는 생산조정에 협조」한다는 확약을 받은 농가에게만 적용
2. 조정보관사업	난가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 가격보다 하락이 되었을 때 계란의 조정을 위하여 보관사업을 개시한다(신선란으로서 내장 보관하며 주로 일시적 또는 계절적 가격변동을 조정)
3. 난 액 공 사	난가가 장기적으로 폭락될 경우 구매를하며 난액으로서 냉동 저장한다. 또는 난가안정기금의 재정적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실시한다
4. 생 산 조 절	1972년부터 정부의 행정지도로 생산자의 자율적 규제에 따라 1974년 이후 일정규모(3,000수)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증수와 규모확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한다.
5. 수 입 정 책	1972년에 액란수입의 수입량조절과 수입관세율의 인상 조치를 취하여 수입을 억제하여 생산자를 보호토록 한다

표 2. 난가 안정 대책과 유통관계

안정대책	항목	시장활용	시장개입	수요조정	비 고
		시장통제	시장불개입	공급조정	
난 가 안 정 기 금	(시장활용)		불 개 입	—	난가보전
조 정 보 관	시장활용		개 입	공급조정	직접공급조정
난 액 공 사	시장활용		개 입	수요조정 (공급조정)	직접수요조정
생 산 조 절	시장활용		개 입	공급조정	생산조정 (계획생산)
수 입 정 책	시장활용		(개 입)	공급조정	수입량조절 (관 세 율)

1) 난가안정기금의 운영과 문제점

안정기금 적립은 2가지 계통을 통하여 기금이 조성 되는데 (1) 농협계통을 통한기금과 (2) 상사계통의 기금 이다. 이 기금은 채란양계가 자체에서 적립한 조성기금으로서 계란값이 비싼시기에 일정액을 적립하였다가 기준가격보다 하락 되었을 때 적립금으로서 기준가격 만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

란수급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것이 특징이며 그때 그때 도매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면 적립금 중에서 차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서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대책을 세운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기금사업에는 계란의 조정보관업무로 발생된 결손의 보전사업비와 보관업무로 발생된 이익금이 기금과 관련되는 직

표 3. 안정기금에 의한 생산자 수취 가격의 상승액과 생산자 적립금

년도	항목 (1) 계약수량대비 보전대상수량 (%)	(2) 평균보전단가 (원/ kg)	(3) 생산자수취가 격인상액(1)×(2)	(4) 생산자적립금 (원/ kg)
'67	21.51	11.67	2.51	1.00
'68	4.04	5.35	0.22	1.00
'69	14.26	8.59	1.22	1.00
'70	27.76	9.72	2.70	1.00
'71	14.02	7.91	1.11	1.00
'72	6.14	3.42	0.21	1.00
'73	8.33	3.01	0.25	1.00
'74	40.50	34.19	13.85	1.50 (1~6月) 2.00 (1~12月)
'75 (4月~12月)	34.54	13.46	4.65	4.00
'76	43.06	9.26	3.98	4.00
'77	49.57	12.39	6.14	4.00
'78	50.94	23.68	12.06	5.00

접적인 요소가 되며 한편으로는 보전 기준가격이 조정보관의 개시 또는 난액공사로 하여금 계란을 매입시키는데 기준가격이 된다는 점에서 난가안정사업은 난액공사 사업과도 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1975년 부터 난가 폭락시 기준가격에 의한 보상을 받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산조정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확인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난가안정을 위한 기금제도는 생산조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 3은 일본의 계란가격 안정기금(농협계통)의 보전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설립 취지는 난가의 주기적 변동 특히 이상 난가폭락등을 염두에 두고 알값이 하락 될때를 대비하여 알값이 좋은 시기에 적립해 두는 방법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난가의 보전실적이 나타나 있듯이 1972년 까지는 계절적 난가 변동 조절사업으로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때 까지는 기금제도에 가입된 생산자가 받는 수취가격이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생산자에 비하여 난가 수취가격 인상액이 별로 크지 못하였으며 별로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다. 즉 안정된 난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 된다 그러나 1974년부터 최근 까지는 기금에 의한 생산자 수취가격 인상액이 크게 드러났으며 생산자로서는 적립금 보다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 반면 안정기금은 바닥이 나고 그나마 보상액에 대한 부채까지도 기금관리기관이 안게 되어 부채에 허덕이는 사업이 되고만 것이다. 특히 1978년도의 실적은 일본의 양계 불황이 얼마나 심각하였나를 응변해 주고 있다.

난가안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사에 노출되게 된것이다. 이 제도 자체는 자립과 자조의 장치로서 뜻하지 않는 난가폭락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마련한 제도였으나 난가안정 기금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로는 난가형성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

표 4. 난가안정대책의 사업 전개

항목 년도	조 정보 관 량	난액공사매입량	생 산 조 정	난가안정기금	비 고
1974	全農協 1,345톤 全鷄連 164	5,035톤	생 산 조 정 의 강 화 책 시 시 달	—	—
1975	188 72	—	”	기금보전에 대한 여생산조정협력 의무화	—
1976	238 235	1,631	”	”	—
1977	147 135	1,262	”	”	—
1978	1,500 527	4,438	”	”	—
1979			” 자주감수운동	”	—

제로서 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시장가격 형성에 개입할 수 있는 난가안정대책과 병행하여야 실효를 거둘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의 운영은 시장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여건하에서 계절적 또는 일시적 난가 폭락에 대비한 대책이 되어야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난가 하락은 이 제도로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 계란의 시장유통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정보관업무와 난액공사의 매입사업

계란의 조정보관업무는 축산안정법에 근거하여 경비조성을 실시하는 것을 뜻하며 이과정은 별도로 상사들의 자주보관 사업도 조정보관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난액공사의 계란 매입은 조정보관사업이나 자주보관사업등은 신선란을 저장 보관하는데 반하여 난액공사의 계란보관은 난액으로 동결조장하는 사업이다.

조정보관과 난액공사의 계란 매입은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4년과 1978년에 상대적으로 대량 보관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중 1974년의 시장격리사업으로 인한 난가의 인

상효과는 연간 평균 7~12월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난가 인상효과를 당시의 전국 출하량에 대하여 적용하여보면 적어도 총액 100~200억원의 인상 금액 총액이 될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시장격리사업은 항상 사업경비가 생길뿐만 아니라 판매차액에서 생기는 손실액이 생기게 마련인데 당시의 시장격리사업으로 생긴 결손액은 출잡아 약 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시장격리사업으로 인한 난가 인상효과는 상당히 높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단기적 효과가 큰 시장격리사업에도 시간적 물리적 또는 재정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 제약조건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부담능력을 확충하는데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장격리방안도 한계는 있으니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역시 계획생산에 의한 생산조절사업과 병행하지 않으면 알될 것이다.

3) 생산조절사업

일본의 생산조절사업은 1972년도 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생

산자의 자율적인 상호이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정이다. 당시 채란계 3,000수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농가를 상대로 하여 규모확대와 증수(增首)억제토록하였다. 한편 도단위 지역별로 사육수수가 실시 당년도인 1974년 사육수수 보다도 10% 이상 감수(減首)되었을 경우에는 감수%에 대한 2분의 1 이내에서

의 복원(復元)은 허락하나 10,000수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하여 증수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77년에는 계란가격 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을 보아 양계경영의 채산한계성과 후계자육성등을 고려하여 1978년부터는 대상농가 규모를 5,000수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곧 5,000수까지는 증수(增羽)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생산조절이란 근본적으로 생산자의 상호협약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생산자 자신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으며 생산자들의 자각만이 자기규제를 할수 있을 것이다.

표 5. 생산조절 기간중 채란양계 농가호수와 사양수수

년도	항목	사양호수	성계사양두수
1974		66만호	12,087만수
1975		51	11,642
1976		38	11,774
1977		33	12,081
1978		28	12,382
1979 (3월현재)		25	12,372

일본의 축산통계로 생산조절 실적을 고찰하여 보면 1974년부터 실시한 생산조절사업에 따라 1975~1976년에는 생산조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1977년부터는 1974년 당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1977~'79년에는 사양호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사양수수는 1974년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생산자 자체의 자율규제에 의한 생산조절이 어렵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4) 무단증수 반대운동과 자주감수 운동

1978년초에 보고된 무단증수(無斷增首) 농가는 전국적으로 350호로 되어 있고 이들농가에서 무단증수된 사양수수는 약 384만수로 보고 되어있다.

생산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온 생산조절사업에 비협조적으로 또는 비양심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생산자단체에서는 소위 「야미증수추방, (暗增羽 追放)」이라는 스로건을 내건 운동을 78년도에 전개 하였다. 이것이 일본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국회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계란의 생산조정 강화에 관한 결의」를 하여 1978년 6월 1일 행정부에 강력히 실시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1979년도 초에는 일본양계협회가 중심이되어 일보전진하여 증수반대에서 「자주감수, (自主減首) 운동이 전개되어 채란양계 1만수 규모 이상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1만수에 1%, 2만수에 2%, 5만수에 5%, 10만수에 10%씩 1만수 단위로 1%식의 사양수수 감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은 1979년 6월 말까지 시한부로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운동이 성공한다면 일본의 난가 안정대책은 성공의 서광을 보게 될것으로 생산자 자체가 수급에 참여 하므로서 난가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간 생산조절은 수요추정에 따라 생산을 증, 감시켜 난가를 안정시키고자 시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제도는 별로 필요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 그

첫째가 체란양계가수가 많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감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생산자들의 자율적규제에 의한 생산조절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상호이해와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평등할 때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례는 성공할 수도 있으나 실패한 예가 더 많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자율적 규제보다는 생산자들이 원하여 타율적 규제내지는 법으로 정하여 강제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호주의 사육수수 활당제도와 같은 것이며 이것이 운영하는 「에그보오드」와 같은 기관이 그 예이다.

5) 결 론

이웃나라 일본의 난가안정대책은 그나라 나름대로의 사회적, 경제적, 양계경영여건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양계산업 안정을 위하여 가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피안의 불」이 아니라 우리나라 양계여건은 일본에 비하여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도 이미 때는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양계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된 산업화를 위하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회 소 사

純 번데기(잠용) 粉!

육계. 비육돈사육을 위한 번데기분을
염가로 공급합니다.

1. 번데기는 동물성단백질이 풍부하고 기호성이 좋으며 증체율이 높아 수익성이 좋습니다.
2. 빵가루는 강피류보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됩니다.

취급품목 번데기분. 빵가루. 어분 포장 50kgpp대入

부 국 사 료 상 회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잠실 4동 88-404 ☎ (423) 3986
공 장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147 ☎ (422) 9051